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인적사항

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주소			

2.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작목 및 농지등

구분	실제 경작작목	조정의무 대상작목	농지등 소재지				실제 재배면적 (㎡)	조정의무 부과대상 면적(㎡)	재배면적 조정방법
			시·군·구	읍·면	리·동	지번			
논									
밭									
합 계(㎡)									

※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 접지불금 전부를 미지급하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